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23.(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37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하고 무차별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범죄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현장 도착 시간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구민 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2)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신속한 순찰 업무를 위해 경찰 순찰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1)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순찰업무에 보다 신속한 대응에 임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 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한 행정의 필요하다 봄.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 2024. 1. 9., 2025. 1. 31.>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전문개정 2010. 10. 29.]